

서울고등법원 2021. 1. 28 선고 2020나2027790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1. 1. 28 선고 2020나202779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9가합53719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영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코리아

담당변호사 이영대

변론 종결2020. 12. 3.

판결 선고2021. 1. 28.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9가합537199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8. 8. 2.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647,383,560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 1) C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채권 중 416,640,000원의 매매대금채권을 양도하고, D공사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고,
 - 2) 원고에게 230,743,5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 항 소 취 지 및 부 대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부대항소를 하면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6면 하단 제1항부터 제7면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10. 26.까지 발생한 C에 대한 채권 원리금을 계산하면 합계

647,383,560원이 되고1) (원금 3억 원 + 2014. 6. 12.부터 2015. 3. 23.까지 연 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1,712,328원(3억 원 × 5% × 285일/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 2015. 3. 24.부터 2020. 10. 26.까지 연 20%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35,671,232원(3억 원 × 20% × (5년 + 217일/365일)), 위 금액은 이 사건 채권의 권면액 729,120,00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최소의 범위는 피보전채권액에 한정된다.】

○ 제1심판결 제7면 하단 제2항 "이 부분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부터 제8면 제8행 "지급할 의무가 있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 부분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가 취소되는 647,383,560원의 범위 내에서 원물반환이 가능한 416,640,000원의 매매대금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230,743,560원(= 647,383,560원 - 416,640,000원)을 원고에게 배상하는 방식으로 원상회복되어야 한다.

나. 추가 판단

1) 피고는,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처럼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가등기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처럼 가등기권자의 지위에서 매매대금채권을 양도받은 때에는 가등기 당시를 기준으로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건물 제4층 G호 등에 대한 가등기는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미 그에 대한 제척기간도 경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7337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법리는 가등기 자체로서는 소유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가등기 시에 소급하여 소유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경우와 같이 그 원인행위와 법률효과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채권양도의 원인행위와 가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예약은 외관상 명백히 다른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달리 이 사건 채권양도와 피고 명의 가등기의 원인행위나 법률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없다[피고 명의의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그 구체적인 권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채권양도가 가등기권리자의 지위에서, 그 권리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라면 이미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척기간도 도과된 상태였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 이후인 2018. 8. 21. M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이전하여 주는 가등기의 부기등기를 마쳤으면서도 이 사건 채권 전부를 M에게 다시 이전하여 주지는 않았던 점(을 제4, 5호증)에서도 가등기와 이 사건 채권양도의 원인행위 또는 법률효과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2)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건물 제4층 G호 등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자인 가등기권리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C의 책임재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책임재산에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그것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가등기의 구체적인 원인관계를 확인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이 이 사건 건물 제4층 G호 등의 소유 명의자이자 매매계약 당사자인 C의 책임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마찬가지로 피고가 가등기권리자로서 가지는 구체적인 권리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채권양도의 상당성과 정당성 등을 판단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나아가 피고는, 피고 명의의 가등기는 친인척 등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

1,477,021,900원(2004.경까지의 대여원금 1,165,279,000원 + 2004. 8.부터 2014년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 투입한 비용 311,742,900원)을 실질적으로 담보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적어도 그 채권액 범위 내에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7 내지 10호증은 입출금내역 및 이를 정리해 놓은 것에 불과하여 그 기재만으로는 C의

친인척들이 C에게 위 금액을 빌려주고 이를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마쳤다가, 가등기 이후 추가로 발생하는 투자금 또는 대여금도 위 가등기로 담보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에 따라 지급받은 중도금 중 건물 철거 및 인도를 위해 필요한 용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채권양도를 사해행위로 보아 이를 취소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가 사해행위로 취득한 금전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였는지를 고려하여 그 원상회복의 범위를 제한할 근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설범식

판사김길량

판사김용민

별지

1) 원고는 2014. 6. 12. C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고, C는 2015. 3. 24.까지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중 729,120,000원의 매매대금채권을 양도하였다.